

韓國의 機能的 所得分配와 分配率 推計*

裴 茂 基*

<目 次>

- I. 機能的 所得分配와 勞動所得 分配率
- II. 推計의 對象과 方法
- III. 推計의 內容
- IV. 部門別 勞動所得 分配率
- V. 部門別 勞動所得의 成長率
- VI. 結 語

I. 機能的 所得分配와 勞動所得 分配率

所得의 分配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그 첫째는 機能的 所得分配(functional distribution of income)이다. 그리고 둘째는 階層別 所得分配(size distribution of income) 또는 人的 所得分配(personal distribution of income)이다.

기능적 소득분배란 生産過程에서 生產要素로서 기능하는 노동, 자본, 토지, 기업경영 등의 生產的 機能에 대하여 이를 生産요소에게 배분되는 소득을 말한다. 따라서 기능적 소득분배란 生산된 附加價值가 生산에 참여한 각종 生產要素 供給者에게 그 生산요소의 生产적 기능에 대한 댓가로 지불되는 것을 말하게 된다. 労動이라는 生산요소에 대하여는 賃金 내지 標給을, 그리고 資本에 대하여는 利子를, 土地에 대하여는 地代를, 그리고 企業經營에 대하여는 利潤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그 때문에 기능적 소득분배 상태를 본다는 것은 生산요소 공급자로 구성되는 몇개의 社會的 階級 또는 階層에게 소득이 기능적으로 어떻게 배분되는가를 보는 것으로 된다.

그런데 이러한 기능적인 소득은 크게 勞動所得과 財產所得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국민경제의 구성원 가운데 노동소득에만 의존하는 賃金勞動者의 수와 그 비중이 압도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과거의 농경사회나 초기 자본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副教授, 이 論文은 1983年度 文教部 學術研究助成費의 支援을 받았음. 筆者는 이 論文의 草稿를 읽고 貴重한 論評을 해주신 韓國銀行 調查 第2部 新國民計定期擔班의 金炳和と 調查役과 서울大學校 勞動經濟研究모임에서 論評해 준 참가자에 대하여 謝意를 表함. 다만 時間의 制約上, 여러가지 提言은 部分적으로 밖에 受容하지 못하였음.

주의 시대와 같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하나의 계급으로서 국민소득의 큰 비중을 차지하면 地主階級의 상대적 비중은 크게 저하하여 토지의 생산적 기능에 대한 지대부분도 크게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資本에 대한 利子 및 利潤이 재산소득의 主軸을 이루게 되며, 地代 등도 이에 포함하여 노동소득과 대칭되는 財產所得으로 통합하여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국민경제의 소득분배는 크게 勞動所得과 財產所得으로 兩分할 수 있으며 그것의 絶對的 크기와 그 相對的 分配比率의 時系列의 변화가 관심의 대상으로 될 수가 있다. 물론 자본주의 경제에서 생산의 형태는 단순하게 자본가와 노동자로 분할된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취업자종에는 自營業主와 家族從事者 등과 같은 집단도 존재하게 된다. 自營業主는 대체로 자신의 일정한 자본투자를 기초로 하여 자신 및 가족노동과 약간의 고용노동으로 中小零細單位의 기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자영업주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노동소득과 재산소득의 混合所得으로 구성되게 된다. 그 때문에 자영업주의 전체소득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노동소득과 재산소득으로 分割하여 볼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게 된다. 그리고 家族從事者는 통상의 임금이 지불되지 않고 자영업주의 家計內에서 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이들 계층에 대하여도 일반적인 고용노동의 경우와 구별하여 취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영업주의 混合的所得에 대하여는 이를 노동소득과 재산소득으로 분할하는 몇 가지의 방법이 있다.⁽¹⁾ 즉 資產基準(asset basis), 勞動基準(labor basis), 固定比率基準(proportional basis), 그리고 年度別比率基準(economy-wide basis) 등이 그것인데 이들 기준에 의하여 자영업주의 소득을 분할하게 되면 國民所得을 勞動所得과 財產所得으로 크게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전체의 分配國民所得을 노동소득과 재산소득으로 구분함으로써 이들의 절대적인 크기와 그것의 상대적 분배비율이 어떤 상태이며 그것이 시간의 경과와 함께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이러한 推計 作業을 통하여 노동소득과 재산소득의 분배율을 살펴보는 것은 階級間의 所得分配狀態의 변화와 그 배후에서 작용하는 몇 가지 경제적 요인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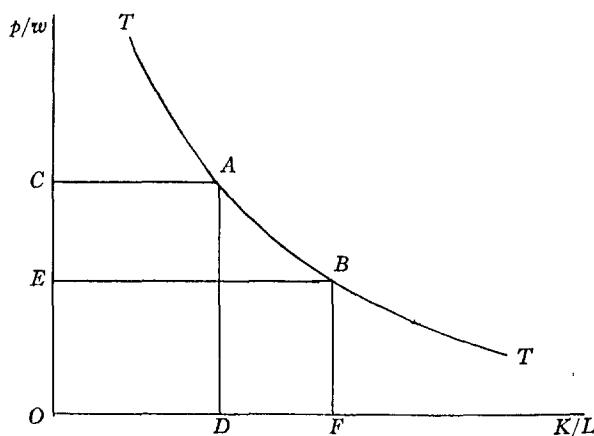
논의를 간단히 하기 위하여 勞動과 資本 두 생산요소만이 존재한다고 할 때 재산소득과 노동소득의 相對的 分配比率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frac{p \cdot K}{w \cdot L} = \frac{p}{w} \cdot \frac{K}{L}$$

(1) I.B. Kravis, "Relative Income Shares in Fact and Theory," *American Economic Review*, December 1959, pp. 917-49 참조.

위의 식을 보면 재산소득과 노동소득의 상대적인 비율은 결국 양요소의 相對的 價格 比率에 兩要素의 供給量의 相對的 比率을 곱한 것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재산소득과 노동소득의 상대적 분배비율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서는 양요소의 상대가격의 변화와 양요소의 공급량의 변화라는 두가지 요인이 배후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이러한 두가지 요인은 물론 상호관련을 가짐에 틀림없다. 즉 자본이 노동보다 상대적으로 더 빠른 속도로 공급이 되면 그것의 가격인 p 는 w 보다 상대적으로 저하할 것이 틀림없다. 이러한 두가지 相對價格比率이 재산소득 대 노동소득의 相對的 分配比率을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1>이다. 그림의 橫軸은 K/L 을 나타내고 縱軸은 p/w 를 나타낸다. 먼저 어떤 경제가 하나의 균형상태에서 출발하여 그 출발점에서는 K/L 는 OD 의 값을 가지고 있었고 그 때의 이에 대응하는 p/w 는 OC 의 높이였다고 가정하자(TT 線上의 A 점). 그런데 K/L 이 증가하여, 즉 자본의 공급량이 노동의 공급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OF 로 되면 p/w 는 감소하여 OE 로 되게 된다(TT 線上의 B 점). 즉 상대적으로 그 공급이 더욱 풍부해진 생산요소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하하게 된다. 여기서는 K/L 의 변화에 대응하여 p/w 의 변화를 논의하고 있지만 거꾸로 p/w 가 변화하여企業이 그에 대응하여 값이 상대적으로 싸진 요소로 대체함으로써 K/L 를 변화시키는 대응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TT 곡선이 어떠한 모양이냐에 따라 요소의 相對的 供給比率(또는 價格比率)이 달라질 때 要素價格의 相對的 比率(또는 要素의 相對的 比率)이 달라지는 모습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림 1>에 나타난 TT 가 만약 直角雙曲線이었다면 A 점에서 B 점으로 사정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양요소의 相對的 所得比率은 不變으로 될 것이다. 그것은 한 요인



<그림 1> 資本과 勞動의 代替關係

의 相對的 變化比率이 다른 요인의 상대적 변화비율에 의해 정확하게 相殺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자본과 노동간의 소득의 상대적 분배비율의 변화를 나타내 주는 또 다른 하나의 要因으로 전체적인 생산과정에서의 生產要素의 代替可能性이라는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要素價格의 상대적인 변화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여 일정한 요소의 使用比率上의 변화가 있다고 가정하자. 만약 p/w 가 10% 상승하였다고 하면, 기업으로서는 상대적으로 비싸진 資本의 사용을 줄이고 그에 대체하여 勞動의 사용을 늘리고자 할 것이다. 그런데 그 경우 K/L 은 정확하게 10% 감소할 수도 있을 것이며 代替의 곤란성 때문에 10% 미만으로 감소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0% 이상 감소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生產이 均衡狀態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frac{p}{w} = \frac{MP_K}{MP_L}$ 의 관계가 성립된다. 따라서 두 生產要素의 限界生產力의 비율인 限界代替率이 변화할 때 그것은 이에 대응하는 生產要素의 使用上의 변화로서 나타낼 수도 있게 된다. 이러한 관계를 나타낸 것이 바로 代替彈力性(elasticity of substitution)이다. 이 代替彈力性은 앞서 본 것처럼 1의 값으로 취할 수도 있고 1보다 작거나 1보다 클 수도 있게 된다. 이렇게 하여 이러한 대체탄력성의 크기도 또한 생산요소의 相對的 分配率의 長期的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價格이 높아진 生产요소의 다른 요소로의 代替可能性 또는 代替彈力性이 크면 클수록 그 生产요소의 分配率은 감소하고 다른 요소의 분배율이 증가하게 된다. 환연하면 長期的으로 勞動의 상대적 공급의 저하로 말미암아 賃金이 자본가격에 비하여 더 높게 상승할 때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힘이 작용하겠지만 그 대체탄력성이 1보다 작게 되면 勞動의 分配率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자본과 노동의 相對的 分配分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제 3의 요인으로서는 外生的으로 주어지는 技術變化의 方向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이 진보되면 대체로 노동과 자본의 生產性을 모두 증가시켜 동일한 생산물의 생산이 보다 적은 生产요소의 투입으로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技術進步가 노동, 자본의 生产성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두 生产요소의 生產性을 똑같은 비율로 증가시킨다는 보장은 없다. 같은 비율로 生产성을 증가시킬 때를 中立的 技術進步라 하고, 노동의 生产성을 자본의 生产성에 비하여 보다 더 빨리 증가시키는 기술진보를 勞動使用的 技術進步, 또는 資本節約的 技術進步라고 하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資本使用的 기술진보 내지 勞動節約的 기술진보라고 부른다. 이상과 같은 노동사용적, 자본사용적, 또는 중립적 기술진보는 양요소의 限界代替率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것이 결국 要素價格의 상대적 비율과 要素의 需要上의 相對的 比率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

적으로 양요소의 相對的 分配率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II. 推計의 對象과 方法

1. 推計의 對象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分配國民所得資料와 각종 노동관계 고용통계 및 임금통계 등을 사용하여 분배국민소득을 노동소득과 재산소득으로 크게 구분하여 이를 추계해 보고자 한다. 韓國銀行에서 매년 집계 발표하는 분배국민소득은 크게 被傭者報酬, 非法人企業所得, 財產所得, 其他 法人移轉支拂, 法人貯蓄, 法人에 대한 直接稅, 一般政府財產과 企業所得이 있고 이로부터 控除項目으로서 公債利子, 消費者 負債利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분배국민소득이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생산과정에서 기능한 생산요소의 댓가로서 生產要素別로 구분될 수 있다면 그것들의 중요성은 같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실제 분배국민소득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방식으로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크게 이를 勞動所得과 財產所得으로 구분하여 전체적인 노동소득의 相對的 比重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분배국민소득을 몇개의 部門으로 나누어 추계해 보고자 한다.

분배국민소득 중에서 非法人企業所得은 주로 中小 零細自營業主가 자신의 자본과 경영, 그리고 노동력을 투입하고 자신의 가족노동에 약간의 고용노동을 바탕으로 하여 이를 경영하며, 따라서 그 곳에서 발생되는 소득은 勞動所得과 財產所得의 혼합된 상태를 이룬다. 그런데 이러한 비법인기업소득은 產業化의 역사가 짧은 後進國이나 中進國의 경우에는 農業 및 零細自營業主가 다수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분배국민소득 중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非法人企業所得의 분배국민소득 가운데서의 相對的 比重은 1953년에는 무려 58.3%였으며 1970년까지도 40.8%로서 같은 해의 被傭者報酬 39.5%를 앞서고 있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產業化의 과정에서 비법인기업부문의 從事者는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감소되어 왔기 때문에 비법인기업소득은 1982년에는 19.2%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그 대신 異用자보수가 55.5%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비법인기업소득의 성격이 混合所得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의 상대적 비중이 상당히 커었던 점을 감안하여 이 논문에서는 먼저 비법인기업소득을 노동소득과 재산소득으로 구분하는 추계를 행하였다. 그런데 여기서도 비법인기업소득을 非農林漁業부문과 農林漁業부문으로 나누어서 추계하였으며, 이들 두가지와 이를 합친 전체 비법인기업소득에

대하여 각각 勞動分配率을 추계하였다.

다음에는 분배국민소득 중에서도 政府部門과 農業部門, 그리고 그 외의 부문으로 크게 나누어 볼 때, 이들 각각이 서로 상당히 다른 特性을 가지고 있음에 주목하여 정부부문과 농림어업부문을 제외시킨 民間非農業部門의 노동소득 및 재산소득을 추계하고 그로부터 이 부문의 노동소득 분배율을 추계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民間非農業部門의 技能的 所得分配狀態와 勞動所得 分配率을 통하여 근대적인 산업국가의 가장 典型的인 部門에서의 기능적 소득분배상태와 노동소득 분배율의 크기 및 그 변화를 살펴 볼 수 있게 된다.

다음에는 이러한 작업과정에서 추계된 각 범주별 勞動所得總額과 財產所得總額을 기초로 하여 전경제에 걸치는 노동소득과 재산소득의 크기 및 노동소득 분배율을 추계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예컨대 勞動所得의 경우 被傭者報酬는 물론, 혼합소득형태로 되어 있는 非法人企業所得中의 各種 勞動所得部分을 별도로 추계하여 이를 전부 합계한 것으로 되게 되며 재산소득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이를 구하게 된다. 이제까지 이러한 분배국민소득의 전체적인 노동소득 및 재산소득으로의 구분을 위한 추계는 별로 시도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다음에는 역시 정부부문과 농림어업부문을 제외한 都市部門에 있어서 近代的 部門과 前近代的 部門으로 구분하여 기능적 소득분배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그런데 資料의 制約上 도시부문을 근대부문과 전근대부문으로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편의상 法人部門과 非法人部門으로 이를 구분하였다. 따라서 民間非農業 法人部門의 소득분배와 民間非農業 非法人部門의 기능적 소득분배를 추계하였으며 이들 양부문에 대하여 각각 勞動分配率을 추계하였다. 오늘날 산업화 과정에서 近代部門이 급속히 팽창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전근대부문에서도 농촌노동력의 도시에로의 유입 등으로 많은 노동력이 취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非近代部門은 달리 都市傳統部門(urban traditional sector) 또는 都市非公式部門(urban informal sector) 등으로 불리워지고 있으며 취업이나 소득분배, 사회보장 등의 측면에서 많은 새로운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都市非公式部門에 대한 통계자료는 대단히 미비하며 이와 같은 기능적 소득분배와 노동분배율의 추계를 통하여서라도 이를 간접적으로 살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에는 農林漁業部門에서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노동분배율을 추계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農業을 包含하는 民間非法人部門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노동분배율도 추계하였다. 農林漁業部門의 기능적 소득분배는 농림어업이 특히 土地 등과 같은 막대한 비중의 資本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므로 통상 그 勞動分配率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農業生產이나 農家所得 등의 구조가 農業生產方式, 農業部門의 雇傭狀態, 農業賃金의 變動 등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과정에서는 이들 농림어업부문에 있어서도 노동소득이나 노동소득 분배율이 이를 반영하여 현저하게 변화하는 것을 포착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農業部門에 있어서의 기능적인 소득분배의 추계와 노동소득 분배율의 추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이 부문에서의 전반적인 經濟動向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위에 열거한 項目들이 이 논문에서 주로 시도한 추계의 대상인 바 이러한 항목에 대하여 中間段階에서도 필요에 따라 여러가지를 추계하였다. 이러한 중간단계에서의 추계내용은 그때 그때 별도로 이에 대하여 언급한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1963~82년간의 기간에 대하여 추계를 시도하였는 바 이는 주로 資料의 制約에 기인한 것이다.

2. 推計의 方法

推計의 方法은 원칙적으로 韓國銀行에서 추계한 分配國民所得 資料를 기초로 하여 이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필요시마다 관련 雇傭 및 賃金關係 자료를 동원하여 노동소득과 재산소득으로 분할하는 추계작업을 하였다.

특히 분배국민소득이 混合所得으로만 나타나 있을 경우 이를 노동소득과 재산소득으로分割 推計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두가지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 첫째는 먼저 해당부문의 就業者數와 이들의 평균적인 賃金 資料를 이용하여 노동소득을 추계하고 이를 혼합소득에서 差減하여 財產所得을 殘餘(residual)로서 추계하는 방법이다. 이를 勞動接近(labor approach)이라 한다. 둘째로는 이와 반대 과정으로 먼저 관련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財產所得을 추계하고 이 재산소득을 혼합소득 총액에서 차감하여 殘餘로서 勞動所得을 추계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만약 두 가지 방법을 모두 가능케하는 통계자료가 구비되어 있다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그것을 비교함으로써 두가지의 추계치가 어느 정도 접근되는지 또는 지나치게 乖離가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알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사정으로는 노동소득을 추계할 수 있는 雇傭關係 資料나 賃金資料 등은 비교적 정비되어 있으나 財產所得을 추계할 수 있는 관련 통계자료는 대단히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부득이 勞動接近方式만을 채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추계의 편의상 전체 分配國民所得을 크게 被雇傭者報酬, 非法人企業所得, 財產所得의 3개 항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財產所得은 단순히 전체 분배국민소득에서 피용자보수와 비법인기업소득을 뺀 것으로 하였으며 그 때문에 정확한 의미에서의 재산소득에 其他項目인 법인이전지불, 법인저축, 법인에 대한 적절세, 일반 정부재산과 기업소득 뿐만 아니라 控除項目으로서 공채이자, 소비자 부채이자 등이 모두 여기에 반영되어 있음에 주

의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의 政府部門은 다만 一般政府의 紙料와 勞賃만이 반영되었으며 政府投資企業 등을 모두 민간부문으로 취급되었다.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물론 법률적으로는 반드시 타당한 방법은 아니지만 이를 政府關聯企業들이 생산공급하고 있는 재화나 서비스 등의 내용을 볼 때 민간기업의 그것과 크게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의의로서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하간 이들 기업은 정부부문에 포함되거나 아니하였으며 政府部門은 단순히 紙料와 勞賃만으로 구성된 것처럼 취급된 것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 그뿐 아니라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一般政府財產도 전체 재산소득에 포함됨으로써 민간부문의 재산소득으로 計上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물론 이하의 추계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다.

이밖에 中間過程에서의 추계를 위한 각종 假定 등은 이하에서 필요시마다 그 때의 내용을 별도로 언급코자 한다.

III. 推計의 內容

1. 非法人企業所得의 勞動所得 및 財產所得으로의 分割

(1) 非農林漁業 非法人企業所得의 分割

非法人企業所得과 같은 혼합소득을 노동소득과 재산소득으로 분할하는 방법에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資產基準, 勞動基準, 固定比率基準, 年度別 比率基準의 네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年度別 比率基準을 택하여 기능별 소득의 분할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非農林漁業部門에 있어서의 非法人企業所得 가운데서 노동소득과 재산소득의 구성에 대해서는 이 부문의 勞動所得이 전체 분배국민소득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중은 피용자보수와 재산소득을 합친 소득액 중에서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중과 같다고 假定하였다. 따라서 먼저 그와 같은 소위 被傭者報酬比率을 계산하여 이를 <表 1>의 1列에 곱하여 2列인 勞動所得을 추계하였다. 그리하여 앞서 말한 勞動接近方式에 의하여 총소득에서 새로 추계한 노동소득을 차감하여 財產所得으로 하였으며 그것이 <表 1>의 제 3列이다. 그런데 여기서의 非農林漁業 非法人企業所得은 자영업주 및 가족종사자로 구성된 소득만이며 被傭者の 소득은 제외되어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第 4列에는 위의 推計를 기초로 하여 勞動所得 分配率($\frac{W_2''}{Y_2^{***}}$)을 계산한 결과가 나와 있으며 제 5列에는 이 分配率의 3個年 移動平均值가 계산되어 있다.

〈表 1〉 非農林漁業 非法人企業所得과 勞動所得 分配率

	非農林漁業 非法人企業所得 ¹⁾ Y_2^{**} (10 억 원) (1)	勞動所得 W_2^{**} (10 억 원) (2)	財產所得 A_2^{**} (10 억 원) (3) = (1) - (2)	勞動所得分配率 $\frac{W_2^{**}}{Y_2^{**}}$ (%) (4) = $\frac{(2)}{(1)} \times 100$	勞動所得分配率 (3個年移動平均) (%) (5)
1963	63.01	42.41	20.60	67.3	—
1964	100.13	67.19	32.94	67.1	66.8
1965	136.74	90.25	46.49	66.0	66.3
1966	176.20	116.12	60.08	65.9	65.9
1967	202.78	133.63	69.15	65.9	65.6
1968	244.88	159.42	85.46	65.1	66.2
1969	327.82	221.28	106.54	67.5	65.2
1970	240.74	151.43	89.31	62.9	64.6
1971	283.66	179.56	104.10	63.3	62.4
1972	268.94	164.05	104.89	61.0	63.4
1973	835.08	549.48	285.60	65.8	63.7
1974	1,121.64	721.21	400.43	64.3	64.4
1975	1,130.55	721.25	418.30	63.0	63.8
1976	1,463.64	939.66	523.98	64.2	64.2
1977	1,925.91	1,259.55	666.36	65.4	66.1
1978	2,216.20	1,522.53	693.67	68.7	67.1
1979	1,938.95	1,304.91	634.04	67.3	67.3
1980	1,626.95	1,073.79	553.16	66.0	66.5
1981	1,880.86	1,243.25	637.61	66.1	66.9
1982	2,325.42	1,597.56	727.86	68.7	—

資料：한국은행, 『國民所得計定(1984)』, 1984. 6.

註：1) 自營業主 및 家族從事者の 소득이며 被傭者의 소득은 제외됨.

2) 非法人企業所得中 非農林漁業部門의 勞動所得 및 財產所得의 分割은 이 部門의 勞動所得이 全體 分割國民所得中 被傭者報酬/(被傭者報酬+財產所得)의 比와 같다고 假定하였음.

위의 추계과정을 정리하면 다음 (1)式과 같이 쓸 수 있다.

$$W_2^{**} + A_2^{**} = Y_2^{**}. \quad (1)$$

(2) 農林漁業 非法人企業所得의 分割

여기서의 農林漁業 非法人企業所得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피용자의 소득을 포함하지 않는 自營業主 및 家族從事者들만의 소득이다. 여기서도 농림어업 비법인기업소득중 勞動所得을 먼저 추계하였다. 이 추계에 있어서는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의 『經濟活動人口年報』에 의거하여 남자 및 여자별로 농림어업부문의 自營業主 및 家族從事者數를 구하였다. 다음에 『農家經濟調查報告書』에 나타난 남녀별 家族勞動의 1년중 換算勞動日數 자료를 이용하고, 自營業主에 대하여는 농업경영에 따른 관리업무나 예비작업, 기타 직업적인 농업종사자로의 역할을 감안하여 家族勞動의 換算勞動日數의 2배에 해당하는 일수를 부여하였다. 그 결과

〈表 2〉 農林漁業 非法人企業所得과 勞動所得 分配率

	農林漁業 非法人企業所得 ¹⁾ A_a^{**} (10 억 원) (1)	勞動所得 $W_a^{**2)}$ (10 억 원) (2)	財產所得 $A_a^{**2)$ (10 억 원) (3)	勞動所得分配率 $\frac{W_a^{**}}{A_a^{**}}$ (%) (4) = $\frac{(2)}{(1)} \times 100$	勞動所得分配率 (3個年 移動平均) (%) (5)
1963	179.81	94.20	85.61	52.4	—
1964	275.57	103.37	172.20	37.5	50.3
1965	233.03	142.47	90.56	61.1	52.3
1966	275.84	160.65	115.19	58.2	60.7
1967	285.80	179.88	105.92	62.9	60.1
1968	347.84	206.19	141.65	59.3	59.1
1969	446.78	246.32	200.46	55.1	56.1
1970	567.42	306.23	261.19	54.0	54.0
1971	716.47	378.82	337.65	52.9	55.4
1972	878.86	521.89	356.97	59.4	55.1
1973	1,023.40	541.29	482.11	52.9	50.3
1974	1,492.18	577.47	914.71	38.7	42.9
1975	2,006.85	747.31	1,259.54	37.2	37.8
1976	2,635.95	990.16	1,645.79	37.6	37.0
1977	3,032.66	1,100.61	1,932.05	36.3	38.7
1978	3,759.66	1,584.23	2,175.43	42.1	44.9
1979	4,469.93	2,510.50	1,959.43	56.2	59.8
1980	3,922.04	3,179.11	742.93	81.1	69.0
1981	5,551.98	3,869.95	1,682.03	69.7	73.1
1982	5,476.64	3,751.03	1,725.61	68.5	—

資料：한국은행, 『國民所得計定(1984)』, 1984. 6.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농수산부, 『농가경제조사보고서』, 각년도.

註: 1) 自營業主 및 家族從事者の 소득이며 被傭者의 소득은 제외됨.

2) 勞動所得과 財產所得으로의 分割은 性別, 自營業主 및 家族從事者別 1日當 労動賃金과 1年中의 労動日數 자료로서 먼저 労動所得을 推計하고 그것을 (1) (A_a^{**})에서 빼어 財產所得을 구하였음.

男子의 경우 1년중 최고 279日, 최하 172日로 되며, 특히 1970년대 후반기 이후는 190日을 초과하지 못하고 있다. 女子自營業主의 경우는 최고 137日, 최하 94日이다. 다음에는 農業協同組合中央會에서 조사한 성인 남녀별 1인당 賃金資料를 이용하여 각각 農림어업부문에 있어서의 남녀별, 자영업주 및 가족종사자별 労動所得을 추계하였다.

최종적인 農림어업 비법인기업소득 중의 推計勞動所得은 〈表 2〉의 2列에 나타나 있다. 따라서 農林漁業 非法人企業總所得인 제 1列으로부터 이를 차감하여 제 3列의 財產所得을 추계하였으며 이들 자료를 기초로 이 부문의 労動所得 分配率($\frac{W_a^{**}}{A_a^{**}}$)을 추계하였다. 그 결과가 〈表 2〉의 제 4列에 나와 있으며 이를 3개년 이동평균으로 계산한 결과가 제 5列에 나와 있다.

위의 추계과정을 정리하면 式 (2)와 같이 쓸 수 있다.

$$W_a'' + A_a'' = A_a^*. \quad (2)$$

(3) 非法人企業所得의 分割

앞의 (1)과 (2)에서 이미 非法人企業所得을 비농립어업부문과 농립어업부문으로 나누어 이들에서 각각 노동소득과 재산소득을 추계하였다. 그 때문에 이러한 두 부문에서는 分割推計를 기초로 하여 곧 非法人企業所得 全體의 노동소득과 재산소득을 추계할 수 있다. 그 결과가 <表 3>에 나타나 있다. 여기서의 비법인 기업소득도 피용자의 소득이 제외된 自營業主 및 家族從事者만의 소득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表 3>의 第 4列에는 이러한 추계결과를 기초로 非法人企業所得 全體의 勞動所得 分配率 $\left(\frac{W_2'}{Y_2^{**}} \right)$ 이 추계되어 있으며 第 5列에는 이러한 노동소득 분배율의 3개년 移動平均이 나타나 있다.

이상의 추계결과를 정리하면 제(3)식과 같다.

<表 3> 非法人企業所得과 勞動所得 分配率

	非法人企業所得 ¹⁾ $\frac{Y_2^{**}}{(10 \text{ 억 원})}$ (1)	勞動所得 W_2' (10 억 원) (2)	財產所得 A_2' (10 억 원) (3)	勞動所得分配率 $\frac{W_2'}{Y_2^{**}}$ (%) (4) = $\frac{(2)}{(1)} \times 100$	勞動所得分配率 (3個年移動平均) (5)
1963	242.82	136.61	106.21	56.3	—
1964	375.70	170.56	205.14	45.4	54.9
1965	369.77	232.72	137.05	62.9	56.5
1966	452.04	276.77	175.27	61.2	62.8
1967	488.58	313.51	175.07	64.2	62.4
1968	592.72	365.61	227.11	61.7	62.1
1969	774.60	467.60	307.00	60.4	59.6
1970	808.16	457.66	350.50	56.6	57.6
1971	1,000.13	558.38	441.75	55.8	57.4
1972	1,147.80	685.94	461.86	59.8	58.1
1973	1,858.48	1,090.77	767.71	58.7	56.1
1974	2,613.82	1,298.68	1,315.14	49.7	51.6
1975	3,137.40	1,468.56	1,677.84	46.5	47.8
1976	4,099.59	1,929.82	2,169.77	47.1	47.1
1977	4,958.57	2,360.16	2,598.41	47.6	48.9
1978	5,975.86	3,106.76	2,869.10	52.0	53.0
1979	6,408.88	3,815.41	2,593.47	59.5	62.7
1980	5,548.99	4,252.90	1,296.09	76.6	68.3
1981	7,432.84	5,113.20	2,319.64	68.8	71.3
1982	7,802.06	5,348.59	2,453.47	68.6	—

資料 : <表 1, 2>에서 作成.

註 : 1) 自營業主 및 家族從事者の 소득이며 被傭者의 소득은 제외됨.

$$W_2' + A_2' = Y_2^{*1}. \quad (3)$$

그리고 위의 式 (1), (2), (3)으로부터 곧 다음 관계도 알 수 있다.

$$W_2'' + W_a'' = W_2' \quad (4)$$

$$A_2'' + A_a'' = A_2' \quad (5)$$

$$Y_2^{***} + A_a^{*1} = Y_2^{*1}. \quad (6)$$

2. 農林漁業 被傭者報酬

農林漁業은 주로 자영업주와 가족종사자에 의하여 생산이 영위되지만 그래도 상당한 정도의 雇傭勞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를 農林漁業 被傭者에 대해 勞動所得을 별도로 推計할 필요가 있다.

〈表 4〉 農林漁業 被傭者報酬

	被傭者報酬 W^* (10 억 원) (1)	農林漁業 被傭者數 (1,000명) (2)	農林漁業 從事者賃金 (月平均) (원) (3)	農林漁業 從事者賃金 (年中) (원) (4=(3)×12)	農林漁業 被傭者勞動所得 W' (10억 원) (5)=(2)×(4)	被傭者報酬中 農林漁業被傭者 勞動所得比率 (%) (6)= $\frac{(5)}{(1)}$ ×100
1963	137.05	725	3,396 ⁽¹⁾	40,752	29.55	21.6
1964	181.62	666	4,276 ⁽¹⁾	56,712	37.77	20.8
1965	226.46	677	5,249 ⁽¹⁾	62,988	42.64	18.8
1966	298.98	694	6,080 ⁽¹⁾	72,960	50.63	16.9
1967	405.27	702	7,291 ⁽¹⁾	87,491	61.42	15.2
1968	523.14	712	9,049 ⁽¹⁾	108,588	77.31	14.8
1969	703.64	725	10,996 ⁽¹⁾	131,952	95.67	13.6
1970	949.90	743	13,751 ⁽¹⁾	165,012	122.60	12.9
1971	1,185.39	781	15,445	185,340	144.75	12.2
1972	1,459.13	773	17,031	204,372	157.98	10.8
1973	1,748.85	728	18,517	222,204	161.77	9.2
1974	2,405.68	702	23,497	281,964	197.94	8.2
1975	3,311.05	677	29,164	349,968	236.93	7.2
1976	4,711.48	664	36,649	439,788	292.02	6.2
1977	6,469.40	812	65,743	788,916	640.60	9.9
1978	9,585.38	708	72,184	866,208	613.28	6.4
1979	12,763.64	615	106,180	1,274,160	783.61	6.1
1980	16,102.44	551	131,422	1,577,064	868.96	5.4
1981	19,237.96	521	162,806	1,953,672	1,017.86	5.3
1982	22,501.39	636	215,738	2,588,856	1,646.51	7.3

資料 : (1) 한국은행, 『國民所得計算 (1984)』, 1984. 6.

(2)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경제 활동인구연보』, 1983.

(3) 1963~73년은 주 1)과 같음. 1971~82년은 노동부, 『직 종별 임금 실태 조사 보고서』(각년도)의 농축·임·수산업 종사자 月平均 임금.

註 : 1) 1963~70년의 임금은 成人男子 1日賃金을 곱하여 구한 것임.

農林漁業部門의 被傭者數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로부터 구하고 이들 被傭者에 대한 賃金은 勞動部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에 의한 농업·축산·임업·수산업종사자의 月平均賃金資料를 年中 劳動所得으로 12배하여 이를 被傭者總數에 곱함으로써 구하였다. 그 결과가 W_a' 로서 〈表 4〉의 제 5 열에 나와 있다. 그리고 이 表에는 分配國民所得의 전체 피용자보수중에서 이들 농림어업 피용자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 6 열에 나타나 있다. 이 表의 제 1, 제 2, 제 6 열을 비교하여 보면 產業化의 진전에 따라 被傭者의 數와 전체 被傭者報酬額이 급속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부문의 피용자수는 거의 절대수에 있어서 증가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지난 20년간 약간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제 6 열을 보면 1960년대초에는 農林漁業部門 피용자의 노동소득이 전체 피용자보수의 20% 대를 초과하였으나 1980년대초에는 이것이 약 5~7%대로 크게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3. 政府部門 및 民間非農業 被傭者報酬

政府部門과 民間非農業部門의 被傭者報酬를 추계하기 위하여 먼저 政府部門에 대하여는

〈表 5〉 政府部門 및 民間非農業 被傭者報酬

	被傭者報酬 W^* (10억 원) (1)	農林漁業被傭者 勞動所得 W_a' (10억 원) (2)	非農林漁業 被傭者報酬 (10억 원) (3) = (1) - (2)	政府部門 被傭者報酬 W_g (10억 원) (4)	民間非農業 被傭者報酬 $W^* - (W_g + W_a')$ (10억 원) (5) = (3) - (4)
1963	137.05	29.55	107.50	36.38	71.12
1964	181.62	37.77	143.85	42.93	100.92
1965	226.46	42.64	183.82	51.33	132.49
1966	298.98	50.63	248.35	70.03	178.32
1967	405.27	61.42	343.85	87.29	256.56
1968	523.14	77.31	445.83	113.40	332.43
1969	703.64	95.67	607.97	143.56	464.41
1970	949.90	122.60	827.30	186.53	640.77
1971	1,185.39	144.75	1,040.64	230.36	810.28
1972	1,459.13	157.98	1,301.15	276.98	1,024.17
1973	1,748.85	161.77	1,587.08	300.47	1,286.61
1974	2,405.68	197.94	2,207.74	396.87	1,801.87
1975	3,311.05	236.93	3,074.12	575.06	2,499.06
1976	4,711.48	292.02	4,419.46	896.72	3,522.74
1977	6,469.40	640.60	5,828.80	1,192.52	4,636.28
1978	9,585.38	613.28	8,972.10	1,512.33	7,459.77
1979	12,763.64	783.61	11,980.03	1,940.79	10,039.24
1980	16,102.44	868.96	15,233.48	2,566.14	12,667.34
1981	19,237.96	1,017.86	18,220.10	3,238.52	14,981.58
1982	22,501.39	1,646.51	20,854.88	3,912.16	16,942.72

資料: (1) 한국은행, 『國民所得計定(1984)』, 1984. 6.

한국은행에서 推計한 一般政府의 「급료와 노임」자료를 그대로 政府部門 被傭者報酬로 이용하였다. 〈表 5〉의 第4列의 W_g 로 나타낸 것이 그것이다. 여기에는 國公立公務員과 教員 및 軍人 등의 급료와 노임이 모두 포함되었다.

〈表 5〉에는 먼저 피용자보수에서 농림어업 피용자 노동소득을 차감하여 非農林漁業 被傭者報酬를 제3열에서 추계하였다. 그리고 W_g 를 다시 제3열의 비농림어업 피용자보수에서 차감함으로써 民間非農業 被傭者報酬를 제5열에 추계하였다.

4. 民間非農業 非法人企業 勞動所得과 總勞動所得

〈表 6〉는 總勞動所得의 推計過程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민간비농업 피용자보수와 非農業 非法人企業 勞動所得(W_2'')을 합하여 民間非農業 非法人企業 勞動所得(W_p)을 추계하였다. 이것은 결국 민간비농업 비법인기업 노동소득(W_p)이 피용자보수에서 政府部門과 農業部門의 被傭者報酬를 빼고 거기에 비농업 비법인기업의 노동소득(W_2'')를 합한 것과 같음을 의미한다.

〈表 6〉 總勞動所得의 推計

	民間非農業 被傭者報酬 $W^* - (W_g$ $+ W_a'')$ (10억 원) (1)	非農業 企業勞動所得 W_2'' (10억 원) (2)	民間非農業 非法人企業 勞動所得 W_p (10억 원) (3)=(1)+(2)	農林漁業 非法人企業 所得中 勞動所得 W_a'' (10억 원) (4)	被傭者報酬 W^* (10억 원) (5)	總勞動所得 $W = W^* +$ $W_2'' + W_a''$ (6)=(2)+(4) +(5)
1963	71.12	42.41	113.53	94.20	137.05	273.66
1964	100.92	67.19	168.11	103.37	181.62	352.18
1965	132.49	90.05	222.54	142.47	226.46	459.18
1966	178.32	116.12	294.44	160.65	298.98	575.75
1967	256.56	133.63	390.19	179.88	405.27	718.78
1968	332.43	159.42	491.85	206.19	523.14	888.75
1969	464.41	221.28	685.69	246.32	703.64	1,171.24
1970	640.77	151.43	792.20	306.23	949.90	1,407.56
1971	810.28	179.56	989.84	378.82	1,185.39	1,743.77
1972	1,024.17	164.05	1,188.22	521.89	1,459.13	2,145.07
1973	1,286.61	549.48	1,836.09	541.29	1,748.85	2,839.62
1974	1,801.87	721.21	2,523.08	577.47	2,405.68	3,704.36
1975	2,499.06	712.25	3,211.31	747.31	3,311.05	4,770.61
1976	3,522.74	939.66	4,462.40	990.16	4,711.48	6,641.30
1977	4,636.28	1,259.55	5,895.83	1,100.61	6,469.40	8,829.56
1978	7,459.77	1,522.53	8,982.30	1,584.23	9,585.38	12,692.14
1979	10,039.24	1,304.91	11,344.15	2,510.50	12,763.64	16,579.05
1980	12,667.34	1,073.79	13,741.13	3,179.11	16,102.44	20,355.34
1981	14,981.58	1,243.25	16,224.83	3,869.95	19,237.96	24,351.16
1982	16,942.72	1,597.56	18,540.28	3,751.03	22,501.39	27,849.98

資料：既出資料임。

다음에 비농업 비법인기업 노동소득(W_2'')과 농림어업 비법인기업 소득중 노동소득(W_a'') 및 피용자보수(W^*)을 합하여 總勞動所得(W)을 추계하였으며 이 결과가 〈表 6〉의 제 6 열에 나타나 있다. 이상의 추계과정을 정리하면 제(7), 제(8)식과 같다.

$$W^* - (W_g + W_a') + W_2'' = W_p. \quad (7)$$

$$W^* + W_2'' + W_a'' = W. \quad (8)$$

5. 民間非農業 所得分配와 勞動分配率

한국은행에서 추계 발표하는 分配國民所得資料와 앞에서의 추계결과를 토대로 하여 民間非農業所得分配와 勞動分配率을 추계할 수 있다. 이것은 정부부문과 농업부문을 제외한 경제부문에 해당되는 것이다.

〈表 7〉에는 먼저 비농업 비법인기업 소득중 재산소득(A_2'')과 법인소득(A_1^*)을 합하여 民間非農業 財產所得總額(A_p)를 구하였다. 여기에 앞에서 구한 민간비농업 비법인기업 노동소득(W_p)을 합하여 民間非農業部門의 所得合計(Y_p)를 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기

〈表 7〉 民間非農業 所得分配와 勞動分配率

	非農業法人企業 所得中財產所得 A_2'' (10억 원) (1)	法人所得 A_1^* (10억 원) (2)	民間非農業 財產所得 A_p (10억 원) (3)=(1)+(2)	民間非農業 非法人企業 勞動所得 W_p (10억 원) (4)	民間非農業 所得合計 Y_p (10억 원) (5)=(3)+(4)	民間非農業 勞動所得分配率 W_p/Y_p (%) (6)=\frac{(4)}{(5)} \times 100
1963	20.60	17.54	38.14	113.53	151.67	74.9
1964	32.94	19.64	52.58	168.11	220.69	76.2
1965	46.49	29.63	76.12	222.54	298.66	74.5
1966	60.08	38.37	98.45	294.44	392.89	74.9
1967	69.15	51.34	120.49	390.19	510.68	76.4
1968	85.46	62.92	148.38	491.85	640.23	76.8
1969	106.54	81.77	188.31	685.69	874.00	78.5
1970	89.31	93.48	182.79	792.20	974.99	81.3
1971	104.10	99.13	203.23	989.84	1,193.07	83.0
1972	104.89	158.67	263.56	1,188.22	1,451.78	81.8
1973	285.60	258.79	544.39	1,836.09	2,380.48	77.1
1974	400.43	417.60	818.03	2,523.08	3,341.11	75.5
1975	418.30	518.59	936.89	3,211.31	4,148.20	77.4
1976	523.98	760.21	1,284.19	4,462.40	5,746.59	77.7
1977	666.36	1,075.55	1,741.91	5,895.83	7,637.74	77.2
1978	693.67	1,461.47	2,155.14	8,982.30	11,137.44	80.6
1979	634.04	1,622.87	2,256.91	11,344.15	13,601.06	83.4
1980	553.16	2,180.72	2,733.88	13,741.13	16,475.01	83.4
1981	637.61	2,071.11	2,708.71	16,224.83	18,933.54	85.7
1982	727.86	1,851.46	2,579.32	18,540.28	21,119.60	87.8

資料：既出資料 및 計算결과임。

초로 民間非農業 勞動所得 分配率($\frac{W_p}{Y_p}$)를 구하였다.

〈表 7〉에서 추계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_2'' + A_1^* = A_p. \quad (9)$$

$$W_p + A_p = Y_p. \quad (10)$$

6. 總勞動 및 財產所得分配와 勞動分配率

앞에서 이미 總勞動所得(W)은 추계하였다. 그리고 總財產所得(A)은 전체 분배국민소득(Y)에서 W를 차감하여 구하였다. 그 결과가 〈表 8〉의 제 3 열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全體 労動所得 分配率(W/Y)이 제 4 열에 계산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제(11)식으로 쓸 수 있다.

$$W + A = Y \quad (11)$$

이러한 労動分配率의 水準은 先進諸國의 長期的인 노동분배율의 변화자료와 비교해 볼 때 흥미가 있다. 〈表 9〉에는 先進諸國의 장기간에 걸친 노동분배율의 변화과정이 잘 정리

〈表 8〉 總勞動 및 財產所得分配와 勞動分配率

	分配國民所得 Y (10억 원) (1)	總勞動所得 W (10억 원) (2)	總財產所得 A (10억 원) (3)=(1)-(2)	(總)勞動 所得分配率 $\frac{W}{Y}$ (%) (4)= $\frac{(2)}{(1)} \times 100$
1963	446.47	273.66	172.81	61.3
1964	646.42	352.18	294.24	54.5
1965	712.88	459.18	253.70	64.4
1966	905.67	575.75	329.92	63.6
1967	1,103.68	718.78	384.90	65.1
1968	1,396.03	888.75	507.28	63.7
1969	1,817.00	1,171.24	645.76	64.5
1970	2,318.26	1,407.56	910.70	60.7
1971	2,872.79	1,743.77	1,129.02	60.7
1972	3,541.69	2,145.07	1,396.62	60.6
1973	4,517.60	2,839.62	1,677.98	62.9
1974	6,352.66	3,704.36	2,648.30	58.3
1975	8,395.66	4,770.61	3,625.05	56.8
1976	11,438.05	6,641.30	4,796.75	58.1
1977	14,856.95	8,829.56	6,027.39	59.4
1978	19,929.51	12,692.14	7,273.37	63.7
1979	25,369.48	16,579.05	8,790.43	65.4
1980	29,940.29	20,355.34	9,584.95	68.0
1981	36,550.35	24,351.16	12,199.19	66.6
1982	40,535.23	27,849.98	12,685.25	68.7

資料：既出資料 및 計算值임。

〈表 9〉 先進諸國의 勞動分配率의 變化

(%)

	勞動所得分配率	財產所得分配率		勞動所得分配率	財產所得分配率
英 國			1925~29	79	21
1860~69	45	46	1954~60	71	29
1905~14	54	46	ス위스		
1920~29	66	34	1924	65	35
1954~60	75	25	1954~60	74	26
프랑스			캐나다		
1853	56	44	1926~29	81	19
1911	66	34	1954~60	81	19
1920~29	71	29	美 國		
1954~60	81	19	1899~1958	76	24
獨 逸			1919~28	73	27
1895	53	47	1954~60	81	19
1913	61	39			

資料 : Simon Kuznets, *Modern Economic Growth*,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6,
pp. 1968-70.

되어 있다. 이 表에 의하면 노동분배율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韓國의 60~70% 수준은 아직도 선진제국의 수준으로서는 어느 정도 낮은 수준이며 선진제국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노동분배율도 앞으로 70%대 이상으로 더욱 상승할 것을豫見할 수가 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1975년에 그 분배율이 가장 낮은 56.8%였으나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도 흥미로운 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7. 非農非礦工業 法人部門 被傭者報酬

法人部門의 被傭者報酬는 크게 非農業非礦工業部門의 피용자보수와 矿工業部門의 피용자보수로 나누어서 추계하였다. 〈表 10〉에는 먼저 非農非礦工業法人部門 피용자보수의 추계과정이 나타나 있다. 就業者數와 紙與額에 대한 범인 및 개인별 자료는 현재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조사하는 『광공업센서스보고서』 내지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이외에는 없다. 따라서 광공업부문에 대하여는 그 자료를 이용할수 있지만 비공비광공업부문에 대하여는 범인부문을 따로 규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여기서 다소간의 무리를 무릅쓰고 10人以上 事業場을 일단 法人部門으로 가정하였다. 이는 1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부로부터 각 산업별 취업자와 임금자료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10인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사업장을 모두 범인으로 취급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과연 몇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사업장을 法人으로 볼 것이냐에 대하여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1958~78년간의 『礦工業統計調查報告書』에 의하면 非法人事業

〈表 10〉 非農非礦工業 法人(10人以上)部門 被傭者報酬

	非農非礦工業 從業員數 (10人以上) (1,000명) (1)	非農非礦工業從業 員數中 事業主 및 家族從事者比率 (%) (2)	非農非礦工業從業 員數中 被雇傭者 L_{1s} (1,000명) (3)=(1) ×[100-(2)]	非農非礦工業被傭 者加重平均賃金 (年間) W_{1s} (1,000원) (4)	非農非礦工 (10人 以上被傭者報酬 W_{1s} (10억 원) (5)=(3)×(4)
1963	179,587	0.6 ⁽¹⁾	178,509	78.43	14.00
1964	163,897	0.6 ⁽¹⁾	162,914	101.00	16.45
1965	168,291	0.6 ⁽¹⁾	167,281	104.81	17.53
1966	189,750	0.6 ⁽¹⁾	188,612	130.30	24.58
1967*	(193,859)* (115,668)	0.6 ⁽¹⁾	192,696	153.19	29.52
1968	197,968	0.6 ⁽¹⁾	196,780	182.84	35.98
1969	281,182	0.6 ⁽¹⁾	297,495	225.64	67.13
1970	384,165	0.6 ⁽¹⁾	381,860	292.75	111.79
1971	421,960	0.6 ⁽¹⁾	419,428	336.43	141.11
1972	403,024	0.6 ⁽¹⁾	400,606	410.92	164.62
1973	464,220	1.2	458,807	452.68	207.69
1974	441,855	0.5	439,669	561.25	246.76
1975	452,302	0.6	449,588	746.44	335.59
1976	502,052	0.2	501,042	1,091.14	546.71
1977	827,532	0.5	823,654	1,529.35	1,259.66
1978	887,183	0.5	882,617	2,099.12	1,852.72
1979	972,719	0.5	967,665	2,496.55	2,415.82
1980	987,375	0.7	980,647	2,940.32	2,883.42
1981	958,939	0.6	953,503	3,573.02	3,406.80
1982	1,073,024	0.5	1,067,458	4,113.74	4,391.24

資料：(1)～(3) 労働부,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 각년도

(4) 労働부, 『매월노동통계조사』(임금총액) 결과임.

註：(1) 자료부족으로 1973～82년 평균인 0.6을 1963～72년에 적용함.

體의 平均 從業員數는 16.1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이외에 유일하게 법인, 비법인의 구분이 되어있는 都小賣業, 음식숙박업에 대한 자료 즉 『都小賣業센서스』에 의하면 10인미만의 소규모 법인사업체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동부의 통계자료가 10인이상 종업원을 가진 사업장을 기초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여기서는 10인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사업장을 법인체로 가정하였다.

〈表 10〉의 제 1 열에는 非農非礦工業 종업원으로 10人 以上 事業體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가 나와 있다. 그리고 이를 종업원중에는 事業主 및 家族從事者로서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제 2 열에 계산하여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비율에 해당하는 종업원 만큼을 뺀 숫자에 "연간임금액을 곱하여 被傭者報酬를 얻을" 수 있다. 제 3 열에는 이러한 비율로 調整된 被傭者(L_{1s})가 나와 있다. 그리고 제 4 열에는 비농비광공업

피용자들의 연간加重平均 賃金(W_{1s})이 나와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곱하여 非農非礦工業 被傭者報酬(W_{1s})를 추계하였다.

8. 法人部門 所得分配와 勞動分配率

이 논문에서는 農業部門에는 法人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農業부문은 처음부터 非法人部門으로만 구분되었으며 사실상 農業법인이 약간 존재할 수 있겠지만 그 특성은 무시되었다. 그리고 여기서의 法人部門에는 물론 정부부문의 政府投資企業體도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이 논문에서 정부부문으로 되어 있는 정부부문의 피용자보수들은 일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法人部門이라 할 때는 민간비농업부문내에서의 법인부문이라 할 수 있다.

<表 11>에는 먼저 앞에서 구한 非農非礦工業 10人以上 사업장의 被傭者報酬(W_{1s})가 나와 있다. 그리고 제 2 열에는 광공업센서스 및 통계조사보고서의 자료로부터 法人部門의 紿與額總額이 나와 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민간비농업 法人部門 被傭者 勞動所得(W_1)을

<表 11> 法人部門 所得分配와 勞動分配率

	非農非礦工業 (10人以上) 被傭者報酬 W_{1s} (10억원) (1)	礦工業法人給與 額(勞動所得) W_{1m} (10억원) (2)	民間非農業法人 部門被傭者勞動 所得 W_1 (10억원) (3)=(1)+(2)	法人所得 (財產所得) A_1^* (10억원) (4)	法人部門 總所得 Y_1 (10억원) (5)=(3)+(4)	法人部門 勞動分配率 W_1/Y_1 (%) (6)= $\frac{(3)}{(5)} \times 100$
1963	14.00	13.02	27.02	17.54	44.56	60.6
1964	16.45	17.02	33.47	19.64	53.11	63.0
1965	17.53	22.27	39.80	29.63	69.43	57.3
1966	24.58	28.81	53.39	38.37	91.76	58.2
1967	29.52	52.55	82.07	51.34	133.41	61.5
1968	35.98	59.57	95.55	62.92	158.47	60.3
1969	67.13	82.07	149.20	81.77	230.97	64.6
1970	111.79	105.07	216.86	93.48	310.34	69.9
1971	141.11	125.51	266.62	99.13	365.75	72.9
1972	164.62	159.50	324.12	158.67	482.79	67.1
1973	207.69	262.34	470.03	258.79	728.82	64.5
1974	246.76	377.23	623.99	417.60	1,041.59	59.9
1975	335.59	549.66	885.25	518.59	1,403.84	63.1
1976	546.71	839.18	1,385.89	760.21	2,146.10	64.6
1977	1,259.66	1,205.87	2,465.53	1,075.55	3,541.08	69.6
1978	1,852.72	1,886.42	3,739.14	1,461.47	5,200.61	71.9
1979	2,415.82	2,427.06	4,842.88	1,622.87	6,465.75	74.9
1980	2,883.42	2,924.30	5,807.72	2,180.72	7,988.44	72.7
1981	3,406.80	3,437.11	6,843.91	2,071.11	8,915.02	76.8
1982	4,391.24	3,877.60	8,268.84	1,851.46	10,120.30	81.7

資料：既出資料 및 計算值임。

추계하였다. 여기에 분배국민소득 자료로부터 바로 알 수 있는 법인소득(A_1^*)을 더하면 法人部門의 總所得(Y_1)을 추계할 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추계결과를 기초로 법인부문의 勞動分配率을 제 6 열에 표시하고 있다.

이상의 추계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W_{1s} + W_{1m} = W_1 \quad (12)$$

$$W_1 + A_1^* = Y_1. \quad (13)$$

9. 民間非農業 非法人部門 所得分配와 勞動分配率

被傭者는 모두 政府部門 農業部門 法人部門과 非法人部門에 종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民間非農業 被傭者報酬 [$W^* - (W_g + W_a')$]에서 民間非農業 法人部門 被傭者報酬(W_1)를 차감하여 民間非農業 非法人部門의 被傭者報酬(W_2'')를 구할 수 있다. 그 결과가 <表 12>의 제 3 열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W_2''' 에 민간비농업 비법인부문

<表 12> 民間非農業 非法人部門 所得分配와 勞動分配率(非法人被傭者 包含)

	民間非農業 被傭者報酬 $W^* - (W_g + W_a')$ (10억 원) (1)	民間非農業 法人部門 被傭者報酬 W_1 (10억 원) (2)	民間非農業 非法人部門 被傭者報酬 W_2''' (10억 원) (3)= (1) - (2)	民間非農業 非法人部門 混合所得中 勞動所得 W_2'' (10억 원) (4)	民間非農業 非法人部門 勞動所得 合計 W_2 (10억 원) (5)= (3) + (4)	民間非農業 非法人部門 財產所得 合計 A_2 (10억 원) (6)	民間非農業 非法人部門 總所得 Y_2 (10억 원) (7)= (5) + (6)	民間非農業 非法人部門 勞動分配率 W_2/Y_2 (%) (8)= (5) / (7) × 100
1963	71.12	27.02	44.10	42.41	86.51	20.60	107.11	80.8
1964	100.92	33.47	67.45	67.19	134.64	39.94	174.58	77.1
1965	132.49	39.80	92.69	90.25	182.74	46.49	229.23	79.7
1966	178.32	53.39	124.93	116.12	241.05	60.08	301.13	80.0
1967	256.56	82.07	174.49	133.63	308.12	69.15	377.27	81.7
1968	332.43	95.55	236.88	159.42	396.30	85.46	481.76	82.3
1969	464.41	149.20	315.21	221.28	536.49	106.54	643.03	83.4
1970	640.77	216.86	423.91	151.43	575.34	89.31	664.65	86.6
1971	810.28	266.62	543.66	179.56	723.22	104.10	827.32	87.4
1972	1,024.17	324.12	700.05	164.05	864.10	104.89	968.99	89.2
1973	1,286.61	470.03	816.58	549.48	1,366.06	285.60	1,651.66	82.7
1974	1,801.87	623.99	1,177.88	721.21	1,899.09	400.43	2,299.52	82.6
1975	2,499.06	885.25	1,613.81	712.25	2,326.06	418.30	2,744.36	84.8
1976	3,522.74	1,385.89	2,136.85	939.66	3,076.51	523.98	3,600.49	85.4
1977	4,636.28	2,465.53	2,170.75	1,259.55	3,430.30	666.36	4,096.66	83.7
1978	7,459.77	3,739.14	3,720.63	1,522.53	5,243.16	693.67	5,936.83	88.3
1979	10,039.24	4,842.88	5,196.36	1,304.91	6,501.27	634.04	7,135.31	91.1
1980	12,667.34	5,807.72	6,859.62	1,073.79	7,933.41	553.16	8,486.57	93.5
1981	14,981.58	6,843.91	8,137.67	1,243.25	9,380.92	637.61	10,018.53	93.6
1982	16,942.72	8,268.84	8,673.88	1,597.56	10,271.44	727.86	10,999.30	93.4

資料：既出資料 및 計算值임。

혼합소득중 노동소득(W_2'')을 더하면 民間非農業 非法人部門 所得合計(W_2)를 추계할 수 있다. 그 결과가 <表 12>의 제 5 열에 나타나 있다.

이 W_2 의 민간비농업 비법인부문 財產所得(A_2)을 합하여 民間非農業 非法人部門의 總所得(Y_2)을 추계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제 7 열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부문의 노동소득과 총소득자료를 이용하여 이 부문의 勞動分配率(W_2/Y_2)을 구하였으며 그 결과가 제 8 열에 나타나 있다.

이상의 추계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W^* - (W_g + W_a') - W_1 = W_2''' \quad (14)$$

$$W'''' + W_2'' = W_2 \quad (15)$$

$$W_2 + A_2 = Y_2. \quad (16)$$

10. 農業部門 所得分配와 勞動分配率

農林漁業部門의 전체 소득은 농림어업부문에 종사하는 自營業主 및 家族從事者들의 혼합

<表 13> 農業部門 所得分配 및 勞動分配率

	農林漁業非法人企業所得 A_a^{**} (10억 원) (1)	農林漁業非法人企業所得中 勞動所得 W_a' (10억 원) (2)	農林漁業非法人企業所得中 財產所得 A_a'' (10억 원) (3) = (1) - (2)	農林漁業被傭者勞動所得 W_a'' (10억 원) (4)	農林漁業勞動所得合計 W_a (10억 원) (5) = (2) + (4)	農林漁業總所得 Y_a (10억 원) (6) = (1) + (4)	農林漁業 勞動所得分配率 W_a/Y_a (%) (7) = $\frac{(5)}{(6)} \times 100$
1963	179.81	94.20	85.61	29.55	123.75	209.36	59.1
1964	275.57	103.37	172.20	37.77	141.14	313.34	45.0
1965	233.03	142.47	90.56	42.64	185.11	275.67	67.1
1966	275.84	160.65	115.19	50.63	211.28	326.47	64.7
1967	285.80	179.88	105.92	61.42	241.30	347.22	69.5
1968	347.84	206.19	141.65	77.31	383.50	425.15	66.7
1969	446.78	246.32	200.46	95.67	341.99	542.45	63.0
1970	567.42	306.23	261.19	122.60	428.83	690.02	62.1
1971	716.47	378.82	337.65	144.75	523.57	861.22	60.8
1972	878.86	521.89	356.97	157.98	679.87	1,036.84	65.6
1973	1,023.40	541.29	482.11	161.77	703.06	1,185.17	59.3
1974	1,492.18	577.47	914.71	197.94	775.41	1,690.12	45.9
1975	2,006.85	747.31	1,259.54	236.93	984.24	2,243.78	43.9
1976	2,635.95	990.16	1,645.79	292.02	1,282.18	2,927.97	43.8
1977	3,032.66	1,100.61	1,932.05	640.60	1,741.21	3,673.26	47.4
1978	3,759.66	1,584.23	2,175.43	613.28	2,197.51	4,372.94	50.3
1979	4,469.93	2,510.50	1,959.43	783.61	3,294.11	5,253.54	62.7
1980	3,922.04	3,179.11	742.93	868.96	4,048.07	4,791.00	84.5
1981	5,551.98	3,869.95	1,682.03	1,017.86	4,887.81	6,569.84	74.4
1982	5,476.64	3,751.03	1,725.61	1,646.51	5,397.54	7,123.15	75.8

資料：既出資料 및 計算值임。

소득과 농림어업부문 被傭者들의 노동소득의 합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먼저 <表 13>의 제 1, 2, 3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농림어업 비법인기업 소득(A_a'')을 분배국민소득 자료에서 얻었고 이로부터 앞서 추계한 농림어업 비법인기업 소득중 歸屬所得인 勞動所得(W_a'')을 차감하여 혼합소득중의 歸屬所得인 財產所得(A_a''')을 구하였다. 그리고 앞서 추계한 농림어업부문의 피용자 노동소득(W_a')과 귀속소득중 노동소득인 W_a'' 을 더하여 農林漁業部門의 勞動所得의 合計인 W_a 를 추계하였으며 그 결과가 <表 13>의 제 5열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앞서 추계한 귀속소득으로서의 재산소득(A_a''')과 이 노동소득합계(W_a)를 합하여 農林漁業部門總所得(Y_a)을 추계하였다. 그 결과가 제 6열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농림어업부문의 勞動所得 分配率(W_a/Y_a)를 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추계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W_a''' + W_a' = W_a \quad (17)$$

<表 14> 民間(農業包含) 非法人部門 所得分配 및 勞動分配率

	農業非人 企業所得中 財產所得	農林漁業勞 動所得合計	民間非農業 非法人部門 勞動所得	民間非農業 非法人部門 財產所得	民間(農業 包含)非法 人部門勞動 所得合計	民間(農業 包含)非法 人部門財產 所得合計	民間(農業 包含)非法 人部門總所 得	民間(農業 包含)非法 人部門勞動 所得分配率
	A_a'' (10억 원) (1)	W_a (10억 원) (2)	W_2 (10억 원) (3)	A_2 (10억 원) (4)	W_{2a} (10억 원) (5)= (2)+ (3)	A_{2a} (10억 원) (6)=(1) + (4)	Y_{2a} (10억 원) (7)=(5) + (6)	W_{2a}/Y_{2a} (%) (8)= (5) × 100
1963	85.61	123.75	86.51	20.60	210.26	106.21	316.47	66.4
1964	172.20	141.14	134.64	32.94	275.78	205.14	480.92	57.3
1965	90.56	185.11	182.74	46.49	367.85	137.05	504.90	72.9
1966	115.19	211.29	241.05	60.08	452.33	175.27	627.60	72.1
1967	105.92	241.30	308.12	69.15	549.42	175.07	724.49	75.8
1968	141.65	283.50	396.30	85.46	679.80	227.11	906.91	75.0
1969	200.46	341.99	536.49	106.54	878.48	307.00	1,185.48	74.1
1970	261.19	428.83	575.34	89.31	1,004.17	350.50	1,354.67	74.1
1971	337.65	523.57	723.22	104.10	1,246.79	441.75	1,688.54	73.8
1972	356.97	679.87	864.10	104.89	1,543.97	461.86	2,005.83	77.0
1973	482.11	703.06	1,366.06	285.60	2,069.12	767.71	2,835.83	73.0
1974	914.71	775.41	1,899.09	400.43	2,674.50	1,315.14	3,989.64	67.0
1975	1,259.54	984.24	2,326.06	418.30	3,310.30	1,677.84	4,988.14	66.4
1976	1,645.79	1,282.18	3,076.51	523.98	4,358.69	2,169.77	6,528.46	66.8
1977	1,932.05	1,741.21	3,430.30	666.36	5,171.51	2,598.41	7,769.92	66.6
1978	2,175.43	2,197.51	5,243.16	693.67	7,440.67	2,869.10	10,309.77	72.2
1979	1,959.43	3,294.11	6,501.27	634.04	9,795.38	2,593.47	12,388.85	79.1
1980	742.93	4,048.07	7,933.41	553.16	11,981.48	1,296.09	13,277.57	90.2
1981	1,682.03	4,887.81	9,380.92	637.61	14,268.73	2,319.64	16,588.37	86.0
1982	1,725.61	5,397.54	10,271.44	727.86	15,668.98	2,453.47	18,122.45	86.5

資料：既出資料 및 計算值임。

$$W_a + A_a'' = Y_a. \quad (18)$$

11. 民間(農業包含) 非法人部門 所得分配 및 勞動分配率

지금까지 추계한 각종 소득분배 관계자료로써 농업부문을 포함하는 民間 非法人部門에서의 勞動所得과 財產所得을 추계할 수가 있다. <表 14>에 그 결과가 나타나 있다.

먼저 농업부문을 포함하는 민간 비법인부문의 勞動所得合計는 농어업부문의 노동소득합계(W_a)와 민간 비농업 비법인 부문의 노동소득(W_2)을 합하여 구할 수가 있다. 그 결과가 <表 14>의 제 5열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農業을 포함하는 民間 非法人部門의 財產所得合計(A_{2a})는 농업 비법인기업소득중 귀속소득인 재산소득(A_a'')에 민간 비농업 비법인부문의 재산소득(A_2)을 합하여 이를 구할 수가 있다. 그 결과가 <表 14>의 제 6열에 나타나 있다.

위에서 추계한 농업부문을 포함하는 민간 비법인부문에 있어서의 노동소득(W_{2a})과 재산소득(A_{2a})을 합쳐 이 부문의 總所得(Y_{2a})를 추계할 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表 14>의 제 7열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소득과 총소득자료를 이용하여 이 부문의 勞動所得分配率(W_{2a} / Y_{2a})을 계산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表 14>의 제 8열에 나타나 있다.

이상의 추계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W_a + W_2 = W_{2a} \quad (19)$$

$$A_a'' + A_2 = A_{2a} \quad (20)$$

$$W_{2a} + A_{2a} = Y_{2a}. \quad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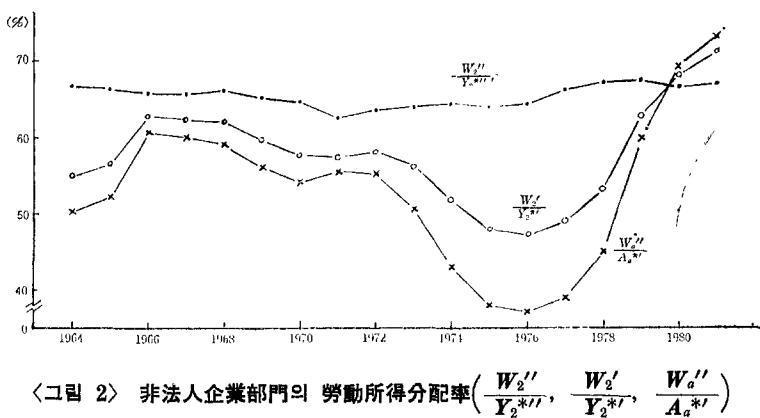
IV. 部門別 勞動所得 分配率

이상에서 우리들은 한국은행에서 추계한 분배국민소득자료를 기초로 하면서 可用 統計資料를 이용하여 전체 분배국민소득을 각 범주별로 勞動所得과 財產所得으로 분할하였으며 각 부문의 勞動所得 分配率를 추계하였다. 여기서는 이러한 부문별 노동소득 분배율의 수준과 그 연도별 변화과정을 그림을 통하여 간단히 살펴보자 한다.

1. 非法人企業部門의 勞動所得分配率의 變化

<그림 2>에는 앞서 表 1, 2, 3에서 추계한 非法人企業分門 내부의 세 가지의 勞動所得分配率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그림은 表 1, 2, 3의 마지막 열에 나타낸 바와 같이 노동소득 분배율의 3개년 移動平均值를 그려 본 것이다.

노동소득 분배율의 매년의 변화사정을 3개년 이동평균 방법으로 다소 완화하여 비교적 완만한 모습의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이러한 趨勢值의 계산에는 취급하는 기간이 훨씬 더



〈그림 2〉 非法人企業部門의 勞動所得分配率($\frac{W_2''}{Y_2^{**}}$, $\frac{W_2'}{Y_2^{**}}$, $\frac{W_a''}{A_a^{**}}$)

장기화하면 5개년 이동평균 등의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겠다.

〈그림 2〉에 나타난 결과는 대단히 흥미로운 점이 없지 않다. 먼저 비법인기업부문중에서도 이를 크게 농업부문과 비농업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 바 非農業部門의 非法人企業에서 勞動所得 分配率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 變化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그림의 맨 아래부분을 나타내는 農業部門에 있어서는 勞動所得 分配率이 비교적 커다란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에 의하면 1966년 전까지는 그것이 상승세였지만 그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1972년 이후에는 1976년경까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1976년을 고비로 하여 또한 그것이 급속히 상승하여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비농업부문 비법인기업에서의 노동소득 분배율을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다른 내부적인 노동소득 분배율의 변화과정이 반영되어 全體 非法人企業部門의 勞動所得分配率은 처음에 상승하다가 완만하게 하강하고 1970년대 중반까지는 급속히 하강하다가 그 이후에는 비교적 급속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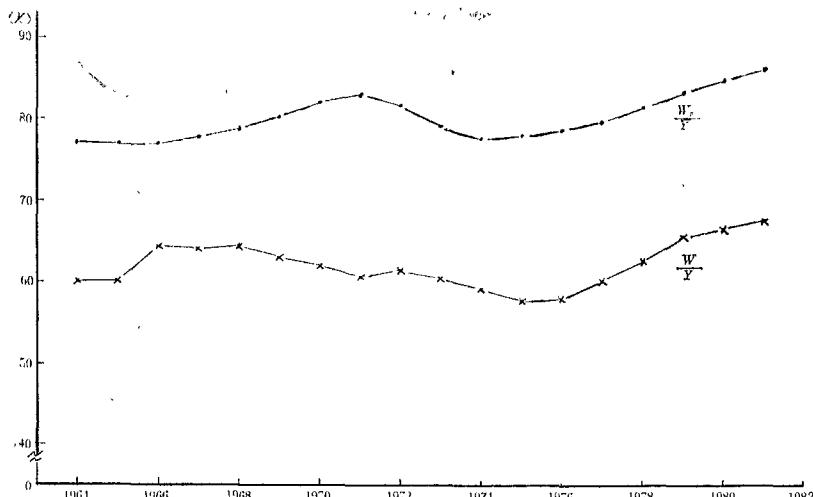
2. 民間非農業部門 및 全部門勞動分配率의 變化

앞서의 추계결과 表 7, 8, 11, 12, 13, 그리고 〈表 14〉에는 각 부문의 勞動分配率이 계산되어 있었다. 이것을 3개년 移動平均值로 계산한 결과가 〈表 15〉에 나와 있다. 이를 결과를 몇개의 그림으로 그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3〉에는 民間非農業部門과 全部門의 勞動所得 分配率이 나타나 있다. 이 그림에 의하면 民間非農業部門은 노동소득 분배율이 상당히 높고 대체로 그 변화추세는 全部門의 노동소득 분배율과 비슷하나 1960년대까지는 약간 다른 패턴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70년 이후에는 비교적 전부문의 노동소득 분배율과 같은 패턴으로 변화하여 왔다. 이것은 점차 후기로 올수록 農業部門을 제외한 產業部門의 比重이 상대적으로 더 커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全部門의 노동

〈表 15〉 部門別 勞動所得 分配率(3個年 移動平均値)

	全 部 門 W/Y	民間非農業部門 W_p/Y_p	法 人 部 門 W_1/Y_1	民間非農業 非法人部 門 W_2/Y_2	農林漁業部門 W_a/Y_a	民間(農業包含) 非法人部 門 W_{2a}/Y_{2a}
1963	—	—	—	—	—	—
1964	60.1	75.2	60.3	79.2	57.1	65.5
1965	60.8	75.2	59.5	78.9	58.9	67.4
1966	64.4	75.3	59.0	80.5	67.1	73.6
1967	64.1	76.0	60.0	81.3	67.0	74.3
1968	64.4	77.2	62.1	82.5	66.4	75.0
1969	63.0	78.9	64.9	84.1	63.9	74.4
1970	62.0	80.9	69.1	85.8	62.0	74.0
1971	60.7	82.0	67.0	87.7	62.8	75.0
1972	61.4	80.6	68.2	86.4	61.9	74.6
1973	60.6	78.1	63.8	84.8	56.9	72.3
1974	59.3	76.7	62.5	83.4	49.7	68.8
1975	57.7	76.9	62.5	84.3	44.5	66.7
1976	58.1	77.4	65.8	84.6	45.0	66.6
1977	60.4	78.5	68.7	85.8	47.2	68.5
1978	62.8	80.4	72.1	87.7	53.5	72.6
1979	65.7	82.5	73.2	91.0	65.8	80.5
1980	66.7	84.2	74.8	92.7	73.9	85.1
1981	67.8	85.6	77.1	93.5	78.2	87.6
1982	—	—	—	—	—	—

資料：表 7, 8, 11, 12, 13, 14에서 計算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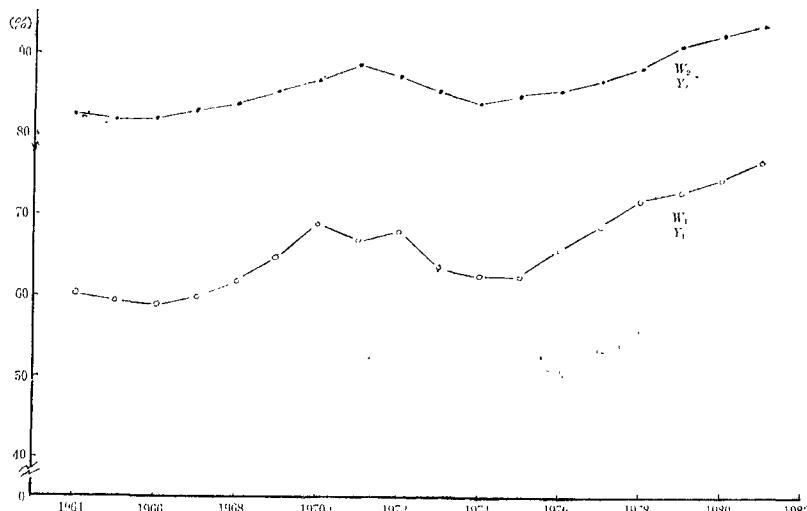
〈그림 3〉 民間非農業部門($\frac{W_p}{Y_p}$) 및 全部門 勞動分配率($\frac{W}{Y}$)

소득 분배율에 더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여기서 한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전체 分配國民所得에 있어서의 勞動分配率이 1975년경을 轉換點으로 하여 그 이후 趨勢的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拙稿⁽²⁾에서 당시의 1979년까지의 자료로 주장한 1975년경의 韓國經濟의 轉換點論이 1979년 하반기 이후의 數年間의 不況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勞動分配率面에서는 그것이 低下하지 않고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물론 勞動所得 分配率은 不景氣時에 上昇하는 경향도 있으나 1980年の 景氣의 溪谷을 지나고 난 1982年까지의 자료를 보더라도 확실히 추세적인 상승임을 짐작케 하는 것이다.

3. 民間非法人部門 및 民間法人部門의 勞動分配率의 變化

〈그림 4〉에는 民間非法人部門과 民間法人部門의 노동분배율이 나타나 있다. 그럼에 의하면 民間非法人部門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이 부문에서 資本裝備率이 대단히 낮고 또한 많은 서비스 부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都市非公式部門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잘 반영하여 노동소득 분배율이 대단히 높게 나타나 있다. 물론 이 民間非法人部門의 勞動所得 分配率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非法人部門의 被傭者所得은 자료의 부족 때문에 전체 피용자보수에서 정부부문, 동업부문 그리고 법인부문의 추계 노동소득을 차감하여 그 殘餘로서 구하였다. 그 때문에 이들 세가지 항목에서 다소 過少推計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그림 4〉 民間非法人部門($\frac{W_2}{Y_2}$) 및 民間法人部門의 勞動分配率($\frac{W_1}{Y_1}$)

(2) Bai Moo Ki, "The Turning Point in the Korean Economy," *Developing Economies*, Vol. XX No. 2, June 1982, pp. 136-137 참조.

결과로서 나타난 非法人企業部門의 被傭者報酬(W_2'')가 지나치게 높게 나왔다. 그 결과 이 부문에서의 노동소득 분배율도 예상한 것보다 지나치게 높게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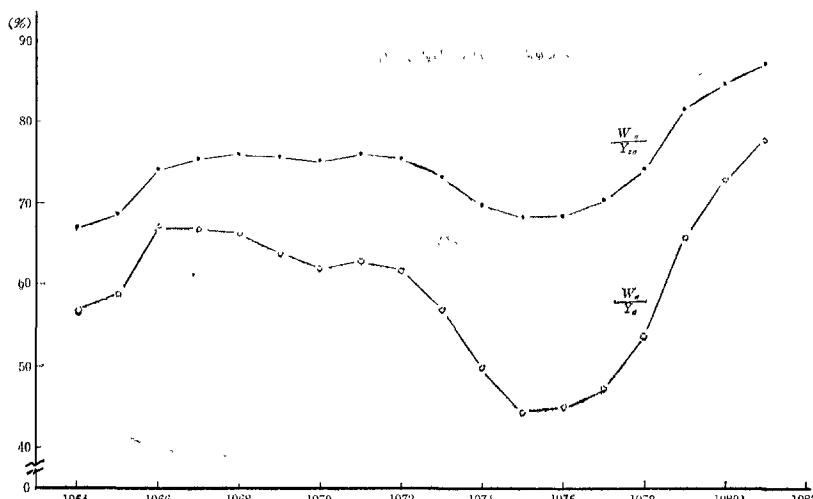
다음에 民間法人部門의 勞動分配率은 1970년도 후반까지 거의 60%에서 70% 구간에 있었으나 최근에는 점차 그것이 증가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민간비법인 및 민간법인부문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대체로 1974년에서 1975년을 전환점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民間(農業包含) 非法人部門 및 農業部門 勞動分配率의 變化

〈그림 5〉에는 농업부문을 포함한 民間非法人部門의 勞動分配率과 농업부문 피용자보수를 포함한 農業部門 全體의 勞動分配率이 나타나 있다.

먼저 농업부문을 포함하는 民間非法人部門의 노동분배율은 농업부문만의 노동분배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며 그 변화폭도 비교적 완만하다. 이는 農業部門이 토지 등과 같은 資本投下를 많이 하는 부문인 것을 반영한다고 생각되며 특히 非法人部門은 資本集約度가 대단히 낮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여기서 1972년을 기점으로分配率이 감소하다가 1975년에서 1976년에 최하점을 이루고 그 이후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농업부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에 農業部門의 勞動分配率은 앞서 〈그림 2〉에서 농업부문 피용자보수가 제외된 순수한 자영업주와 가족종사자들의 노동소득 분배율만 보았던 것과 패턴은 극히 유사하다. 그러나 이 그림은 農業部門의 被傭者報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1975년을 하나의



〈그림 5〉 民間(農業包含)非法人部門($\frac{W_{2a}}{Y_{2a}}$) 및 農業部門 勞動分配率($\frac{W_a}{Y_a}$)

轉換點으로 하여 급속히 감소되던 노동분배율이 그 이후에는 급속히 상승하고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農業部門에서의 勞動力不足과 그에 따른 賃金上昇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V. 部門別 勞動所得의 成長率

앞에서 推計한 각 부문의 勞動所得자료를 기초로 하여 부문별로 노동소득이 어떻게 成長해 왔는가를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가 있다.

그 첫째는 部門別로 勞動所得이 每年 얼마 만큼씩 增加하여 왔는가 하는 것이다. 經濟發展의 과정에서 產業과 職業의 構造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農業部門의 종사자는 점차 감소하며 賃金勤勞者는 절대수나 그 상대적 비중이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부문별로 취업자수와 그 노동서비스에 대한 報酬의 두 가지 要素로 구성되는 勞動所得도 제각기 다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둘째는 각 부문에 있어서 취업자 1人當勞動所得의 증가율도 살펴볼 수가 있다. 이는 위에서 본 총노동소득(금액)중에서 1人當의 보수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다. 가령 농업부문에서 취업자의 수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더라도 그 1人當보수가 전체의 평균보수보다 상대적으로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되면 농업부문의 노동소득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가 있게 된다.

〈表 16〉에는 이러한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나와 있다.

表의 第1列에는 노동소득의 1963~64年 平均과 1981~82年 平均間의 年平均 成長率이 계산되어 있다. 表에 의하면 總勞動所得(被傭者報酬와 混合所得中의 歸屬勞動所得을 합친 것, W_1)은 名目額으로 每年 27.9% 上昇하여 왔으나 被傭者報酬(W_1^*)만은 31.1%로 이를 上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로 自營業主와 家族從事者가 大宗을 이루는 非法人企業部門(W_2')은 被傭者報酬보다 훨씬 낮은 21.7%의 成長率을 나타내었고 그 가운데서도 非農業部門(W_2'')은 19.8%로 매우 낮은 成長率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앞서 近代部門과 前近代部門의 代辨值로도 말할 수 있다고 한 民間非農業 法人部門(W_1)과 民間非農業 非法人部門(W_2)은 각각 35.9%와 28.3%로 그 성장율에 있어서의 격차가 현저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음에 각 부문별로 그 부문에 被傭者나 自營業主 또는 가족종사자로 취업한 취업자의 1人當 노동소득의 年平均 成長率을 〈表 16〉의 第2列에서 보면 흥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表 16〉 部門別 勞動所得의 成長率(1963~64~1981~82年 平均) (單位: %)

部	門	勞動所得의 年平均 成長率 (1)	1人當 勞動所得의 年平均 成長率 (2)
總勞動所得	W	27.9	23.6
總被傭者報酬	W^*	31.1	23.8
非法人企業所得	W_2'	21.7	19.4
(非農業)	W_2''	19.8	13.2
(農林漁業)	W_a''	22.5	22.5
政府部門被傭者	W_g	28.4	—
農林漁業(合計)	W_a	22.5	22.7
(農林漁業被傭者)	W_a'	22.7	23.8
民間非農業非法人企業	W_p	30.7	—
民間非農業法人	W_1	35.9	—
(非農業非礦工業被傭者)	W_{15}	36.1	—
(礦工業法人被傭者)	W_{1m}	35.7	—
民間非農業非法人(合計)	W_2	28.3	—
(民間非農業非法人被傭者)	W_2'''	32.1	—
民間(農業包含)非法人(合計)	W_{2a}	25.7	—

資料：表 1, 2, 3, 4, 5, 6, 8, 10, 11, 12, 13, 14에서 計算함.

註：成長率은 1963~64 兩年的 平均勞動所得 또는 1人當 勞動所得과 1981~82 兩年的 同所得間의 年平均 成長率임.

있다.

먼저 총노동소득(W)으로 볼 때 1人當 보수의 증가율이 노동소득총액의 증가율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총노동소득은 1人當 노동소득의 寄與보다 취업자수의 증가측면의 기여가 더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被傭者報酬(W^*)에서는 그러한 측면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즉 피용자보수총액은 31.1 %씩 증가하여 월이나 피용자들의 1人當 보수는 同期間中 23.8%의 증가에 그치고 있어서 그 동안 피용자의 절대수의 증가가 크게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反하여 農林漁業 부문에 있어서는 오히려 취업자수의 증가보다는 1人當 보수의 증가율이 더 높게 전개되어 第 1列에 나타난 노동소득의 성장률을 결과시켰음을 알 수 있다.

VI. 結語

이상에서 우리는 비록 不完全하게 나마 韓國의 分配國民所得을 勞動所得과 財產所得으로 여러가지 部門別로 推計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推計자료를 기초로 勞動分配率을 계산하고, 각 부문별 노동소득의 年平均成長率과 1人當 노동소득의 年平均成長率을 계산하여 보았다.

推計의 方法이나 利用한 資料, 사용한 假定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개선할 점이 남아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기간도 자료의 제약때문에 1963~82年間으로 그치고 있으나 통계자료의 정비와 함께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한 推計努力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위에서의 推計는 물론 추계방법, 利用資料, 그리고 사용하는 가정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 추세는 그다지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며 한국경제에 대한 實證研究에 있어서의 利用可能性도 어느 정도 있으리라고 믿는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資料를 活用하여 노동소득과 재산소득으로 일단 추계해 보는 데 注力하였으며 이것을 이용한 연구나 推計結果에 대한 分析은 다음 기회로 미루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는 다음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參 考 文 獻

- [1] 裴茂基, 「所得分配」, 邊衡尹·金潤煥編, 『韓國經濟論』, 第15章, 裕豐出版社, 1977.
- [2] 南亮進·小野旭, 「要素所得と分配率の推計——民間非1次産業——」, 一橋大, 『經濟研究』, 第29卷 第2號. 1978. 4.
- [3] 南亮進·小野旭, 「分配率の趨勢と變動」, 同書, 第29卷 第3號, 1978. 7.
- [4] Bai Moo Ki, "The Turning Point in the Korean Economy," *Developing Economies*, Vol. XX No. 2, June 1982.
- [5] I.B. Kravis, "Relative Income Shares in Fact and Theory," *American Economic Review*, Dec. 1959.
- [6] Simon Kuznets, *Modern Economic Growth*,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6.
- [7] Ryoshin Minami & Akira Ono, "Behavior of Income Shares in a Labor Surplus Economy: Japan's Experience,"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Jan. 1981.